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상임이사(단장) 공개모집 공고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상임이사(단장)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이사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직위	채용방법	임기	비고
임원	1명	상임이사 (단장)	공개모집	선임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성과급적 연봉제 4급 공무원 상당

2. 응시 자격

구 분	내 용
응시 자격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재단 운영 활성화와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며, 진취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자 4.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 5.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6. 재단 인사규정 [별표2] 직급별·등급별 임·직원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경력 기준	1. 공무원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국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관련 업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전향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거나 스포츠 관련 기관·단체에서 경력이 있는 자
우대 사항	1. K리그 구단의 대표이사 또는 단장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방법: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 후보자 선정(3배수 이내)
⇒ 합격자 발표 ⇒ 이사회 의결

○ 1차: 서류전형

- 1) 당해 채용 분야와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 등 적격 여부
- 2) 평가항목
 - 자격, 경력(40점 / 정량평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60점 / 정성평가)
- 3) 평가 대상자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선정(인원 제한 없음)
 - ※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 충족 인원이 없을 경우 채용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2차: 면접시험

-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평가
- 2) 평가항목: 전문성(20점), 리더십(20점), 경영성과 창출능력(20점), 조직관리 및 소통능력(20점), 윤리의식 및 대외협력(20점)
- 3) 면접시험일: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후보자 선정

- 1) 면접평가 결과, 평가대상자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순 3배수 이내 임용후보자 선정

○ 합격자 결정

- 1) 이사장이 임용후보자의 면접평가 결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부정합격 또는 결격사유 등 발생 시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4.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후 자필 서명

- 응시원서 1부

- ※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증 및 경력(경험)증명서 1통 (증빙이 필요할 경우 제출)

-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발생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성범죄(아동폭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1부

-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추후 제출

-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명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5. 모집일정

- 공고기간: 2026. 09. 29.(화)~10. 16.(금) 17:00【17일간】

- 접수기간: 2026. 10. 07.(수)~10. 16.(금) 17:00【10일간】

- 원서접수: 방문(토·일·공휴일 불가),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31136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천안축구센터 2층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

-이메일: ccfc2002@naver.com

-문 의: ☎ 070-8801-1689

※ 접수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등기))/이메일 공통)

- 1차(서류) 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 예정
- 2차 면접 일정 및 장소: 2026. 10. 28.(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30.(금) 예정
- ※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시 사전 공지)

6. 기타사항

- 응모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에 근거하여 반환 청구시 반환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선발예정 인원이 없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도 포함)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류심사 7일 전까지 천안시 및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홈페이지, 통합공개시스템에 변경 공고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단 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070-8801-16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응시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상임이사(단장) 공개모집 응시원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임원	지원직무	상임이사(단장)	접수번호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교육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2026. . .

지 원 자: _____(인)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성 명:

◇ 생년월일:

◇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십시오.

◇ 직무수행계획

※ 작성요령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출신학교)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축구단 채용예정 직무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도록 작성바랍니다.
- 작성요령(예시)
자신만의 역량, 노하우,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단의 비전체계를 기반으로 천안시티FC의 중장기 목표와 플랜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분량은 A4지 5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지원자: (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사진, 주민등록번호	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시 사용	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전화번호	서류적격심사,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주 소	응시자 본인확인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가족사항 등 증빙서류	서류적격심사,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I 고유식별번호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시 사용	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 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I 제3자의 제공

제공 대상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천안시청 등 감사기관	감 사	응시원서	감사기간
4대 보험공단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영구보존 및 입, 퇴사시 이용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I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이사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서명)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앞쪽)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			
취업예정사실	취업예정기관 명칭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 (억원)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경위	취업예정직위					
	취업 후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계획 *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					
	취업동기 및 경로 *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					
	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8호의8서식(취업 지원·예정 확인서)
작성방법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적으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3.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및 같은 항 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같은 항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	
※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참 고 사 항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직제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구성 및 운영) ①재단 사무국의 직책은 단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며 조직과 정원은 [별표 1]과 같이한다. 단, 필요시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정원 외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있다.

②재단은 선수단과 사무국으로 구분하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경영지원팀,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선수단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이사(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